

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898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2월 17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을 신설하고,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지식재산 교육 기본계획을 「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‘서울지식재산센터 등’으로 위탁기관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-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식재산 교육 기본계획을 ‘지식재산 기본 계획’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).
- 지식재산 교육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과 추진실적 평가 규정을 마련함(안 제5조제3항 신설).
- 지식재산 교육 시행계획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제4항 신설).
- 지식재산 교육 사무를 ‘서울지식재산센터 등’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제2항).

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.

안 제5조제1항 중 “수립한다” 를 “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” 로 하고,
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지식재산
기본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
있다.

안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
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지식재산 교육 시행계획(이하
“시행계획” 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
한다.

④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 및 해당연도의 시행계
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안 제6조제2항 중 “전문기관이나 단체” 를 “서울지식재산센터 등” 으
로 한다.

〈수정안 조문대비표〉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책무)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5조(지식재산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한다.</p> <p><u><단서 신설></u></p> <p>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3. ~ 5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책무) ① (제정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5조(지식재산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4. ~ 6. (제정안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지식재산 교육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</u></p>

<신 설>

제6조(지원사업 등) ① (생 략)

②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 및 해당연도의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사업 등) ① (제정안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서울지식재산센터 등에
-----.

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재산 창출, 보호 및 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지식재산”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·정보·기술,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,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,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(遺傳資源),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모든 시민이 지식재산을 창출, 보호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원활한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시민 지식재산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지식재산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식재산 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
2. 지식재산의 창출·보호·활용 교육의 전략
3. 지식재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
4. 지식재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
5. 지식재산 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
6. 그 밖에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지식재산 교육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 및 해당연도의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사업 등) ① 시장은 시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의 창출, 보호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지원
 2. 지식재산 교육 교재·교구의 개발 및 보급
 3. 지식재산 교육 사업
 4. 지식재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
 5.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 교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서울지식재산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·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홍보 등) ① 시장은 시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 진흥을 위한 전시회 및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관계 구축)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특허청, 저작권보호위원회,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